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644
-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발 의 일 : 2020년 7월 13일
- 회 부 일 : 2020년 7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5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입법예고(2020. 7. 17. ~ 2020. 7. 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2016년 9월 29일 신설)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9년 시행한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을 통해 실시한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시 자치법규 점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1) 차별적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3) 입장 및 이용 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4)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5) 반환권 제약(공공시설 이용 시 반환조항 미비)
	6) 구제권 제약(과태료 부과징수 법적 근거, 구제절차)
시민참여 보장	7)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8)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
	9)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 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반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용료 관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광진	2020	36	367	-	0.0%	-	0.0%	36	367	▶대관료 수입 ▶예약 후 방문 시 사용료를 받아 취소 반환금 발생 안 함
	2019	-	-	-	-	-	-	-	-	
	2018	-	-	-	-	-	-	-	-	
영등포	2020	92	1,925	47	51.1%	20	1.0%	45	1,905	대관료 수입
	2019	173	2,490	65	37.6%	0	0.0%	108	2,490	대관료 수입
	2018	-	-	-	-	-	-	-	-	

○ 청년공간 예약 취소시 당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 왔으나,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 동 조례에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년청에서는 그동안 청년공간별로 반환율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규정없이 공간별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방적인 노쇼(예약 부도) 등은 선량한 다른 시민의 이용을 제약할 수 있는바, 취소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달리 정할 필요성 및 통일된 반환율 규정 적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청년공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환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현행	개정안	청년청 수정의견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생략) 〈신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위원 : 김태한

입법조사관 : 신정희